

사법감시

Justice Watch Newsletter

격월간 「사법감시」 / 제12호 / 1999년 7월 / 등록일 1996년 2월 23일 / 등록번호 마-2428 / 발행인 김종배

목 차

논 단 / 현 사법시험제도의 위헌성 2

특 집 / 사법개혁 이렇게 하자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발족취지문 6

• 사법개혁 15대 과제 9

주장과 주장 / MBC 대전법조비리 보도와 검사들의
소송제기

•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하면서 10

• 우리는 국민의 편에 설수 밖에 없다 11

• 긴급토론회 대전법조비리 보도에 대한
검사들의 소송제기, 어떻게 볼 것인가 13

사법감시 조점 / 아직도 구시대에 살고 있는 검찰과 법원

• 5·6공 시국사건 관련자 임용탈락 온당한가 21

• 구시대적 사찰과 진(眞)공안 22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백서 사건에 부처 23

• 수원지법 판사의 오만과 편견 24

쟁점 연면 / 중간점검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특별검사에 맡겨야한다 25

• 재판 불출석, 국회위원은 법을 안지켜도 된다? 26

사법감시 25시

• 특별검사제에 대한 검찰의 13가지 오해와 편견 27

Cyberlaw / 외국의 사법제도

•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31

사법감시센터 활동보고

• 주요논평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정부사법개혁위원회」 33

• '박충근검사의 대한매일 여기자 성추행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34

• '대전 법조비리' 관련 활동 일지 35

“현 사법시험제도는 위헌이다”

정부가 현 사법 시험 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직
업에 대하여, 그 종사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위
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저렴하고 질높은 법률
서비스를 위해서 법조인 숫자의 획기적 증원이 요청
된다는 현실적 필요성의 논리를 한단계 뛰어넘은
‘위헌성’의 논리는 무엇인가?

사법개혁, 이렇게하자

대전 법조비리 이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에 떠밀려 구성된 정부 ‘사법개혁위원회’ 그 위원회
에는 개혁 대상자인 법조인 기리의 밀실 탁상공론
만 무성하다는 말도 들리는데...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의제안
을 통해 알아본다.

MBC대전법조비리 보도와 검사들의 소송제기

‘대전 법조비리’에 대한 MBC 보도를 문제삼아 검
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기했다. 공직자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 그 한계는
어디인가?

특별검사제에 대한 검찰의 13가지 오해와 편견

특별검사제가 미국
에서 실패한 제도라
는 이유를 포함해
검찰이 최근 특검제
를 도입해서는 안될
13가지 이유를 공개
적으로 주장하고 나
섰다.

미국여성이 다이어트 한다고 뱅글라데시 여성도 다이어
트를 해야 하는가? 검찰 주장의 허구성을 낱알이 파
헤쳐본다.



헌 사법시험제도의 위헌성

특정 직업의 종사자 숫자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가?

박경신 / 한동대 교수, 미국변호사

정 부가 헌 사법시험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직업에 대하여 그 직업에 종사할 사람들의 숫자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 제15조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제37조 2항은 국가가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직업의 자유를 제한 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문들의 해석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당구장판결'을 통해 독일의 '단계이론'을 받아 들였다. 즉,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입법자가 헌법상 가장 폭넓게 허용되는 1단계 제한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가능한가를 우선 평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만 헌법상 더욱 엄격히 제재받는 2단계 제한이나, 그것도 모자랄 경우에만 가장 금기시되는 3단계 제한으로 전이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1단계는 특정 직업이나 사업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되어 이들의 영업 및 직업 수행의 시간, 장소 및 형태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행동이 단지 [직업]이라고 이름붙여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상의 헌법상 보장을 받을 수는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1단계 제한은 일반 형법에 대한 [입법자 형성의 자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나 매춘이나 마약거래를 금지 하는 법률 등이 그 예다.

2단계와 3단계는 새로이 특정 직업이나 영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의 진입을 제한 하는 것이며 헌법상 더욱 엄격히 금기시된다. 여기서 2단계 제한은 자격시험 등을 통해 특정인의 직업 및 영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격미달자들의 직업 및 영업수행을 금지하는 것이며, 자격시험의 내용과 난이도가 정상적인 직업수 행 요건과 비례할 경우에는 자유로이 허용된다. 그러나, 3단계 제한은 그 사람들의 능력과는 하등 상관없는 이유로 직업 및 영업수행을 금지할 경우이며, 이와같은 제한은 그 제한을 통해 방지하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직업의 자유'보다 더 중요 하다고 판단될 때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폭발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소들 사이의 거리 제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a clear and present danger)'은 미 국연방대법원이 문구화한 것으로, 국가가 특정인이 특정언사를 구사할 자유(freedom of speech)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로서 처음 사용되었다. 대체 로 위헌법률심사의 가장 엄격한 기준이다.>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위 단계이론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2단계 제한이라고 생각하 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법시험 합격정원이 미리 정해지기 때문이다. 즉, 변호

사가 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직업수행능력과 하등 상관없는 이유로, 말하자면 특정 시험에 합격했는가 기준이 아니고 그 시험에서 특정등수 안에 들었는가를 기준으로 변호사가 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3단계 제한이다. 물론, 합격기준을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시험문제를 매년 다르게 출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대평가의 요소를 채점방식에 도입하는 것은 2단계 제한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통계학적인 부대조치로 허용되겠지만 아예 최종합격자 숫자를 정해놓는 것은 철저히 3단계적이다.

여기서 3단계 제한으로서의 사법시험제도를 평가해보자. 첫째, 소비자들의 피해나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 등은 3단계 제한을 정당화시켜 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들지 못한다. 2단계 제한, 즉, 합격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넘는 사람들은 몇 명이 되든 모두 변호사자격을 주는 시스템으로도 위의 '위험'들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더 큰 문제로, 제한의 근거가 없다. 사법시험령 제3조가 행자부장관이 '법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고 되어있을 뿐이며 행자부장관이 숫자를 정할 때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는 지는 어느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사법시험령은 모법도 없기 때문에 어디서 빌어올 '입법취지'도 없다. 단지 사법시험령 1조가 '이 영은... 변호사가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한 수험생의 학식과 능력 유무가 다른 수만명의 수험생들 중 몇 명이나 '필요한 학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와 논리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

마지막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가 법률로써 통제받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는 법률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37조를 위배했다는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문제다. 법률은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사법부들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미국에서는 judicial deference to legislative judgment)라는 개념을 갈고닦아 빛내는 것은 미우나 고우나 국민들의 대표들 간의 토론과 표결, 즉 political process의 산물이 갖는 의미 때문이다. 즉, 국민들이 1인1표의 원칙으로 이론적으로라도 평등한 위치에서 대의 토론을 통해 표결을 거쳤을 경우, 그 산물이 일정하게 평등권을 침해하더라도 입법부의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평등권의 침해, 즉 국가에 의한 '자유경쟁의 저해'가 법률로써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의 '직업의 자유' 원칙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반독과점법에서도 보여진다. 한국의 '공정거래와 독점규제와 관한 법'은 법률에 의거한 행위일 때에는 사기업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부터 면책해준다. 미국의 반독과점법(antitrust)은 경

쟁을 저해하는 행동을 저지른 지방정부나 행정기관등에 대한 소송도 허용하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반독과점법상의 면책특권이 있는 국가행위(state action)라 할지라도, 법률로서 정해지지 않을 경우 국가나 주정부가 그 특정사업을 독점하려고 했는지 등의 입법자의 의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법률을 통하지 않고 변호사업에 대한 진입방해물(entry barrier)을 형성한다는 면에서 실정 독점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다면 위반되도록 독점관련법이 미국식으로 확장되어야하는 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직업의 자유'나 '자유경쟁'과 같이 시장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평등권의 영역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원칙은 그 침해규정들이 사회관계층의 이해관계들이 의사당에서 충실하게 대변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해 검증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되어야한다.

물론, 현 사법시험제도의 위헌성은 사법시험령이 현재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률로 승격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선진화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실제로 의사당내에서 본격적인 political process로 들어갔을 때, 특정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미리 국가가 정해버리는 3단계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실정헌법상 명백히 위헌'이다.

우리는 '미국에는 100년이 떨어져있고 일본에는 50년 떨어져있다'는 말을 서로 해가며 고도성장을 서둘러왔다.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에 걸쳐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직업허가제(occupational licensing)를 보면 그 격차를 더욱 극명하게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가를 떠나서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1차산업외의 직업들은 나라에서 성은이 망극하게도 허가를 내주어야만 종사할 수 있다는 봉건적인 인식이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의 사법부는 이미 직업허가제가 가질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독점적 폐해 즉, 소비자보호라는 허명 아래 입법부가 이미 특정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창출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1930년대 이전에는 위헌법률결정으로 그 이후에는 반독점법(antitrust)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자의적인(arbitrary) 직업허가규정들을 폐지시켜왔다. 간단한 예로, 1932년의 '뉴스테이트 얼음회사'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기존 얼음회사들이 당해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얼음제조업의 신규허가기준으로 정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였다. 대법원은 "이 규제의 실질적 경향은... 새로운 기

업체들이 해당산업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기존 업체들의 수중에 독과점을 만들고 키워주는 것이며 소비대중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 규제는 '소비대중을 제품변질이나 불공정가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 및 배급과정을 통제하는 류(즉, 위 3단계이론에서 1단계 제한에 해당하는 - 필자)의 것이 아니며, ... 독과점을 키우고 경쟁을 저해하며, ...해당산업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진입을 막는 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한 우유생산자가 기존생산자들의 숫자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주정부의 권한을 빌어 다른 사람들이 소를 기르고 우유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몇 명의 농민들이 지난 수년간 재배하여 이득을 본 특정작물에 대해 '이 작물은 우리나라가 자급자족할 수 있으니 내년부터는 아무도 새로이 이 작물농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한다면, 통치행위상의 재량사항으로 받아들여질까, 아닐 것이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특정직업을 수행할 자유는 입법자에 의해 특정행동 전체가 불법화되거나(1단계 제한), 그 사람이 직업수행능력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2단계 제한), 입법자가 방지해야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3단계 제한)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

위와같은 명백한 법리이론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주장이 '변호사는 다른 직업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 변호사는 실제로 다른 직업과 다르다. 저렴한 법률서비스는 룰만 지킨다면 '마음대로' (laissez faire) 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한 축이다. 사인의 자유로운 소송행위를 통해 룰이 집행되지 않는 시장경제는 그 룰의 불명확성 때문에 transactional cost(극단적인 예로, 뇌물)가 높아져 비효율로 치달아 실패하기 마련이며, 소송행위등을 통해 그 효율성을 검증받지 못한 이름뿐인 룰들을 운영하는 정부도 예산낭비에 빠질 뿐이다. 그러나, 현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은 IMF극복이나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 '할 수 있으면 좋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재판청구권은 우리가 아무리 못살기로 작정을 했어도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들이다. 

지난 7월 20일, 경실련·민가협·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행정개혁시민연합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발족했다. 연대회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사법개혁이 법조인의 이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총체적 사법개혁을 이루어낼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취지문

I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숨돌릴 틈조차 없이 급속히 변화해 왔다. 세계화에 따른 법률시장의 개방, 지방자치시대의 본격화, 나아가 통일 등에 따른 법률서비스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이 IMF 경제위기를 맞아 변화와 자기개혁에 나서고 있는 바로 이때에 유독 완강하게舊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사법분야이다.

근대 사법제도가 시행된 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법원을 비롯한 사법 분야의 구조와 관행, 법조인의 층원, 법학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변화된 것이 없다.

최근에 국민적 여론의 규탄을 받고 있는 일련의 법조비리사태는 이와 같은 구조적이고 누적된 사법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 사법개혁의 문제가 또 다시 국민적 관심이 되는 것은 해방 이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제도적 장치의 근대화 작업이 이룩되는 가운데서도, 유독 사법과 검찰의 영역에서만은 가장 낙후된 일제의 절대 지배적 잔재가 온존한 상태에 있고, 또한 그 동안 사법분야가 독재권력과 영합하는 한편으로 인권보장과 권력의 대한 사법적 견제라는 본래적 기능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작동하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에게 값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오로지 권위주의적·관료주의적·귀족주의적 전근대적 요소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소수에 의해 독과

점화된 구조 속에서 이익을 얻는 기득권 집단을 한편으로 하고, 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몫으로 되어있다.

II

국가와 사회 전 부문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사법부문에 대한 개혁만이 개혁의 무풍지대가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에게 값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개혁은 정치개혁, 경제개혁, 행정개혁 등과 함께 민주주의와 국가경쟁력을 이루는 기본과제이다. IMF의 국가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도 이 과제들에 대한 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995년 이후 의정부법조비리, 대전법조비리, 사상초유의 대구고검·검사장의 항명파동, 서울지검 검사들의 집단행동 등을 지켜보면서 법조계는 더 이상 그대로 갈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는 충분히 성숙되고 있다. 특히 그간 사법개혁이 제기될 때마다 '천천히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라는 명제는 이제 한계에 달았다. 사법개혁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절실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조인력의 관리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그 동안 한국사회가 갈구해 마지않았던 법의 지배 또는 법치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개혁의 일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법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법과 사법'을 쟁취하는데 두어져야 한다.

사법개혁은 무엇보다도 많은 장애물을 넘지 못해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억울함 속에 좌절해야만 했던, 또 좌절하고 있는 한계집단으로서보통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III

이를 위해 정부는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사법부문에 대한 개혁을 간과하고 지나간다면 현 정부의 개혁도 본질적 의미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난 94년에 대법원은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일련의 개혁 프로그램을 정리한바 있으나 개혁이라기 보다는 이른바 대법원 내지 법원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개선' 차원에서 진행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국민의 법률서비스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였다. 또한 95년에는 법체계와 법조계 내지 사법부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있던

사법개혁에 관해 더 이상 이들 법률가에게 맡겨 둘 수 없다는 국민들의 압도적 여론의 뒷받침을 받은 당시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의 이념에 걸맞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법조계의 이기적 논리와 정부의 정치적 고려로 국민이 원하던 사법개혁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 증가 등 부분적인 개선에 그치고 결국 좌절되고 말았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IV

최근 국민의 정부는 이번에는 철저하고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아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오는 8월말까지 사법개혁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그간의 활동내용을 볼 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사법개혁위원회의 인적구성에서 있어 과반수 이상이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법률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의 위원회 활동도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과제들을 설정하고 개혁대안을 논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 주도로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으로 진행되어 그 성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이미 김대중 정부는 그나마 95년 사법개혁의 유일한 성과인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에 관한 정부와 대법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출범이후 그 약속을 파기한바 있어 사법개혁 의지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가 진정으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사법 개혁의 근본적인과제들을 의제로서 명확히 설정할 뿐만 아니라 그 진행방식에 있어서 국민적참여와 토론으로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사법개혁 문제가 소수의 특정직업집단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관심에 의해 지연됨이 없이 적기에, 국민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법개혁의 주체는 현재의 제도하에서 피해만 입고 사는 일반 국민일 수밖에없으며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있기 위해서는 국민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한다.

법조인집단은 그 자체가 강력한 사회적 권력을 가진 집단이므로 사법개혁의 문제를 그들 손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정직업집단의 직업적 요구로부터 독립하여 보잘 것 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 그것이 사법개혁의 방법이 되어야 하며, 사법개혁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차대한 개혁이 또다시 굴절되고 왜곡되어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의 주도에 의해 단순히 특정정권의 입장에 따라 처리되는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결합된 노력의 산물로 승화되어,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를 위한 사법제도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적 토론과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V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대변하여 사법개혁이 완전하고도 근본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차원의 사법개혁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하고자 한다.

우리 연대회의는 그 동안의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와 같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조직적인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국민의 입장이 대변되지 않고, 이해관계집단에 의한 공허한 논쟁 끝에 속에 주변적인 사안의 개선에 그칠 뿐 사법개혁이 무산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정당한 개혁대안의 형성과 관철을 위해 끊임없는 여론화 및 감시와 비판, 그리고 조직적 시민운동을 통해 사법개혁이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사법개혁 방향이 정치적 고려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모아 가는 일에 충실할 것이며, 동시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닫히지 않는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진정으로 합리적인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연대회의는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며 아울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정부는 현재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국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진행방식에 있어서 국민적 참여와 토론으로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경하라.

2.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 개혁의 근본적인 과제들을 의제로서 재설정하여야 하며 그 과제에 대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제안은 별지와 같다.

3. 정부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개혁안 작성시한을 8월 말에 그치도록 한 당초의 예정을 변경하여 근본적인 사법개혁과제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여야 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충분한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999. 7. 20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실련, 민가협,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YMCA,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행정개혁시민연합

투자자시민행동

증권시장 망치고 투자자 우롱하는 주가조작
현대증권과 거래하지 맙시다

현대증권 불거래운동에 모두 동참하여
이 땅에 더이상 주가조작과 같은 증권사기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합시다.

- 증권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현대증권을 이용하지 맙시다.
- 현대증권이 발매하는 상품에 가입하지 맙시다.
- 현대증권과 거래하는 시민들은 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옮깁시다.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제안

사법개혁 15대 과제

①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기반 마련

-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
 - 사법시험 합격자의 숫자 제한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개선
 - 법조인수 획기적 증진
- 법조일원화 및 판·검사임용제도 개선
 - 법조일원화
 - 법관 직급제 폐지
 - 평생법관제도 정착
- Law School 제도 도입을 포함한 법학교육 혁신
 - 정식 법학교육을 받은 자에게 변호사자격시험 응시 기회 부여
 - 사법연수원 프로그램의 혁신
 - 개방과 관련하여 전문변호사 육성책 마련

②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개혁

- 인권법(인권법 공대위안)
 - 인권법 및 인권위원회 : 법무부인권법이 아닌 시민 인권법으로
 - 법무부산하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는 것 반대
 - 실질적인 예산 기획·집행권 보장
 - 실질적인 중립인사권 확보와 수사권, 기소권 확보가 필요
- 변호인의 노력
 - 전체 사법과정(예: 수사에서 수형단계까지)에서 변호인참여보장
 - 공익변호사제 활성화(예: 군법무관과 별개로 군복무 변호사의 공익요원제 도입)
- 법률구조
 - 변호사의 무료법률구조활동 의무화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 확대
 - 집단 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
 - 법원문턱을 낮추기 위한 인지대, 감정료 인하

③ 검찰중립성 확보를 위한 사법개혁

- 특별검사제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특별검사제 도입 : 1회성 특검이 아닌 상설적 특검제가 되어야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살아있는 권력을 감

시·통제할 기구

- 공안검찰 축소 및 검찰제도 개편
 - 공안검찰의 축소 (공안에서 학원, 노동분야 제외)
 - 검찰 인사위원회 설치
 - 구속기간 단축
 - 검사동일체원칙, 상명하복규정의 개정
 - 모든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 재정신청을 통한 기소재량 남용의 통제
 -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사건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
 - 일본식 검찰심사회 제도의 도입 검토

④ 사법권에 대한 시민참여를 위한 사법개혁

- 인사청문회
 - 대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에 대한인사청문회
 - 인사청문회를 위한 시민평가위원회 구성
- 시민재판참여
 - 배심제, 참심제, 검찰심사회등 사법에 대한 시민참여방안 도입
- 법조관련 위원회의 시민참여
 - 법조인 인사·징계 등 각종위원회에 시민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내에 시민참여방안 마련)

⑤ 법률서비스기반을 위한 사법개혁

- 수임료
 - 수임료의 투명화와 실질과세
 - 변호사의 보수기준과 그 적정성 유지, 법률로서 변호사보수기준 선정
 - 형사, 가사사건의 성공보수 금지
- 전관예우의 척결과 변호사수임료
 - 전관변호사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퇴임전 2년동안 근무했던 관할지에서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 불구속재판의 원칙 실현 및 양형위원회 구성
- 법조윤리 강화
 - 법조 윤리 및 징계, 윤리장전의 이행에 대한 시민감시
 - 인권강화를 위한 상시적인 인권교육의 의무화

언론의 자유와 공직자의 명예훼손,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MBC 대선법조비리 보도에 대한 검사들의 소송제기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과,
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의 긴급토론회 자료를 싣는다.

검사측 주장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글은 대선법조비리에 대한 MBC보도를 문제삼아 소를 제기했던 검사들의 소장중
(소를 제기하는 이유) 부분이다.

1987년의 이른바 민주화운동 이후 우리 언론계는 정부의 언론개방 정책으로 인하여 과점적인 경쟁제한체계가 붕괴되었고 신문들 비롯한 활자매체는 매체의 수에서 뿐만 아니라 발행부수에서도 눈에 만큼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새로운 민간방송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비롯한 신매체의 등장으로 우리는 바야흐로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매체의 환경변화는 정보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사회의 지향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작용도 적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과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온 언론의 공적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언론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는 법조에서 상당한 관용적 차원에서 다루어져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적 정보를 영리의 도구로 삼는 선정적 언론의 문제는 이미 그 도가 지나쳐서 언론인

스스로 언론을 가르켜 언론권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한 언론 기자는 언론권력이 두려운 건 그것이 숨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개혁은 정치권력과는 달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어떤 짓을 저질러도 응징되는 일이 없다고 솔직히 지적하면서 숨어 있기에 이들의 권력행사 방법은 어떤 공격에도 쉽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숨어 있기에 이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신비화 할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비판당하였을 때 이들은 매일매일 대량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통해 보복할 수 있는 무기도 지니고 있습니다.

제야출신의 정치인들까지도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의식한다면 이들의 논치를 살펴야 하고, 심지어 정치권력에 비판적인 교수나 문인들까지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의식한다면 숨은 권력비판에 주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 눈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에 손잡을 때 무력한 것은 바로 숨은 권력입니다. 누구일까, 숨은 권력이 따리 들고 있는 저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고 저들의 견고한 성문을 두드릴 사람은, 라고 자기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무소불위의 언론 그 중에서도 특히 방송의 위력은 실로 위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사의 한 PD는 고발성 프로그램의 취재방식에 대하여 스스로 다 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방송되는 사회고발성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다른 나라의 것들보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미를 가능케하는 것은 어떨 땐 취재대상에 대한 횡포로까지 여겨질 수도 있는 취재방법입니다. 총을 들고 마치 적진에 뛰어드는 듯한 박력있는 카메라 워킹, 취재거부를 하는 상대방 몰래 사진을 찍거나 음성을 따는 '몰래 카메라'수법의 사용 등, 미국 같은 나라에서라도 고소당하다 볼일 다 본 그런 취재방법이 심심찮게 사용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죄인이라도 얼굴을 들고 당당히 자기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당연시하는 미국사회와 나쁜 사람은 얼마간 막 대해도 괜찮다는 우리사회와 문화적 분위기와도 관계가 있지만, 물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이런 의식은 변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취재방식은 점점 더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 특히 방송의 안하무인적인 횡포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악의에 찬 왜곡보도가 1개월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때 매스미디어 특히 텔레비전 매체의 엄청난 공시효과로 인해 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나 인격상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됨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상업주의에 지배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지울 수 없는 부정적 인상을 일반인으로 하여금 각인시켜 이제는 육체적, 사회적 상처를 남길 지언데, 국가의 기강을 좌우하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인 법원과 검찰구성원, 특히 판사와 검사에 대한 멸시와 조롱은 곧 국가자체의 존립근거를 그 근저로부터 뒤흔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지 피고들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 현직 대전 지방 검찰청 및 서울지방 검찰청 남부지청 소속 검사들인 원고들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국가기강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심정에서 또한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책임마저도 외면한 채

진실을 왜곡보도하는 언론, 특히 방송의 폐해에 대한 최소한의 경종을 울리고자 본건 제소를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

김종률, 김부식, 최진규, 이재현, 김오수, 김현호, 허세진, 이정만, 정중택, 한명섭, 정재봉, 하충현, 이용성, 이중희, 강남일, 김현철, 전훈일, 강신철, 김기현, 김학자, 이진욱, 심재철(이상 전·현직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및 대전지검소속 검사 22인)

서

MBC측 주장

“우리는 국민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다”

이 글은 문화방송 기자회견에서 검사들의 집단제소에 대해 발표한 성명서이다.

전 법조비리를 특종 보도한 이래 개혁을 촉구하는 일관된 자세로 관련 보도를 해 온 문화방송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 당사자들은 당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소속됐던 검사 22명으로, 그들은 “검사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1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법원에 냈다. 보도 당사자로서 우리는 실로 당혹스러움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들이 언론 보도를 문제삼아 사상 초유의 집단 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그 추이가 세간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이번 집단 소송 건은 그 자체가 사건일 뿐 아니라, 단순한 세간의 관심을 넘어 우리 나라에서 권력과 언론 사이의 향후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

가 될 것이라는 게 문화방송 기자들의 판단이다.

이에 우리는 먼저 집단 소송에 까지 이른 발단이 된 대전 법조 비리 사건의 본질을 검사들이 직시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언론의 사명이자 존립 근거인 ‘국민의 알 권리 추구’에 대한 검찰의 인식 전환을 충심으로

바란다.

대전 법조 비리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보도 과정에서 문화방송은 언론 본연의 책무 수행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전관 예우로 대표되는 법조 비리는 그 동안 갖은 추측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지 않다가 최근 의정부와 대전에서 일부나마 그 실상이 발설됨에 따라 우리는 집중 보도를 통해 법조계의 고질화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고 외쳐왔던 것이다. 한 달 남짓 이어지는 보도 과정에서 검찰이나, 검사 개인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사안을 다루지 않았다고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화방송은 관련 보도로 인해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는 법조인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표현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검사들은 소송을 고집했던 것이다.

둘째, 동료 검사들이 관련된 법조 비리 사건의 실재적 진실을 놓고 과연 소송을 통해 검사들이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고자 하는 것이 적절한 처사인지를 묻고 싶다.

검찰은 범죄 수사를 주재하고 기소를 독점한다. 특히 이번 건의 경우 검찰은 내부 관련자가 많아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서 수사했다. 그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이번에도

역시 '축소수사'에 따른 싸늘한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검사들이 '잘못된 언론 보도'라고 지적한 근거는 유일하게 검찰측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전부라는 모순된 현실을 우리는 역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묻는다. 대전 법조 비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이며 수사를 통해 과연 얼마만큼 그 실상이 파헤쳐졌다고 보는가!

검사들은 그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과정에서 '언론의 잘못'을 법정에서 다투어 보자고 한다. 100보를 양보하고서라도 그 같은 처사는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셋째, 우리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 굳게 서서 언론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력인 검찰권이 제대로 쓰이는지의 여부는 마땅히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외부에 대해 굳게 둘러쳐진 겹질 안에서 안주해 온 검찰이 자신들의 세계를 겨냥한 언론의 집중 보도에 대해 이처럼 집단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앞으로 언론은 검찰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때 상당한 정도의 부담으로 위축되게 마련이고 더 나아가 감시를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언론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에 비해 현저한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혹시 검찰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그 같은 불순한 의도를 깔고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문화방송 뿐 아니라 전체 언론의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밝히려 한다.

대전 법조 비리 보도로 인해 훼손된 검찰의 명예 회복의 길은 문화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다. 우리는 설령 소송에서 경영상의 타격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검찰에 대한 감시기능을 포기하지 않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보도로 법조개혁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바라건대 지금 이 시점에서 검사들은 국민들이 위임한 검찰권을 제대로 쓰기 위해 묵묵하고 성실하게 복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적인 신뢰를 다시 쌓아 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높은 직업 윤리로 무장, 진정한 '국민의 알 권리' 추구를 위해 분투하는 것이야말로 각기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원

‘사법비리보도에 대한 검사들의 소송제기,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4월 29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참여연대는 긴급토론회 ‘사법비리 보도에 대한 검사들의 소송제기,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이 소송사건을 ‘공직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공직자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

장호순 /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소 위 “대전법조 비리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 문화방송에 대해 검사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소속되었던 검사 22명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와 함께 11억원을 배상하라고 문화방송에 요구했다. 박봉의 검사들이 440만 5천원에 이르는 인지대를 지불해야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문화방송이 대전법조비리 사건을 보도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허위보도 및 추측, 편파 보도를 통해 악의적으로 대한민국의 법관·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전체를 경멸, 조롱, 혐오, 배척, 망신, 폄하”했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국가의 기강을 좌우하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인 법원과 검찰 구성원, 특히 판사와 검사에 대한 멸시와 조롱은 곧 국가자체의 존립근거를 그 근저로부터 뒤흔드는 것”이라고 한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가 우선인지 아니면 공직자의 명예가 더 중요한지 치열한 법정공방이 (만약 법적인 논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면) 벌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두 세력집단간의 “자존심을 건 싸움” (스포츠 기자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대로)이다.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누가 이기나 흥미롭게 지켜볼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일이지 필자는 근심스럽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심정적으로 한쪽을 응원하고 있다.

만약 판사가 판결결과를 낭독하는 지경까지 간다면 필자가 승소하기를 바라는 쪽은 문화방송이다. (혹시

필자와 내기할 사람이 있다면 필자는 “소송 중간에서 원고와 피고가 적당히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유야무야 된다”는 쪽에 10만원을 걸겠다). 이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문화방송과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특별히 문화방송 프로그램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필자는 “보고 또 보고”를 보고 또 보면서 히히덕 거리는 아내와 딸에게 드라마속의 왜곡된 여성상을 지적하며 (가부장적 권위를 이용해) 강력하게 시청중단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아내는 악착같이 방영 마지막날까지 TV 앞에 매달렸다. 남편이 보지말라니까 더욱 보고싶고, 그래서 더 재미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또한 현재의 “가괴한” 문화방송의 소유구조가 완전한 민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몰지각한” 언론학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검찰이 아닌 문화방송을 응원하는 것은 검사의 명예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상 검찰이나 언론은 우리사회에서 굳이 응원단이 필요없는 무소불위의 집단이다. (아마 언론학자나 법학자 중에서 이번 소송을 두고 어느쪽 편을 들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래서 필자에게까지 MBC기자회로부터 원고청탁이 온 듯 하다.) 검찰과 언론은 국민의 주권을 정식으로 위임받은 대의기관도 아니고, 우리사회 만사형통의 만병통치약인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집단도 아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누구나 그들 앞에만 서면 작고 초라해진다. 그리고 돌아서면 한결 같이 그들에게 곱지 않은 말을 해댄다.

국민중 상당수는 언론이 권력과 자본의 대변자로 전락했고, 검찰은 힘없고 제수없는 피라미들만 잡아들인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강조하는 '공정한 법집행'이나 언론이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FUCK YOU!"라고 외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과 언론이 서로 치고 받는 싸움을 한다면, 아마 국민들은 둘 다 죽지 않을 정도까지 치고받다가 링밖으로 실려 나오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싸움에서 국민은 결코 관객이나 방관자로 머물 수 없다. 그들은 고래싸움에 걸려 든 새우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언론이 제 할일을 못해 생기는 피해의 궁극적인 희생자는 바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깨위에는 검찰과 언론 모두를 진정 국민을 위한 집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집단으로 개혁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실려있다.

검찰과 언론을 둘다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비록 내키지 않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확보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가장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기본권, 즉 헌법에 보장된 권리중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경우 다른 모든 기본권도 결국 잃고 말 것이다. 더욱이 언론이 공권력의 요체인 검찰을 제대로 감시·비판하지 못한다면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법집행도 기대하기 힘들다. 신체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도 지킬 수 없고 평등권이나 재산권의 보장도 장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요컨대 우리가 언론을 불신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부작용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설사 언론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언론의 취재보도환경을 위축시키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야 함을 뜻한다. 언론이 개인의 명예훼손과 같은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

는 것이다. 물론 언론의 자유만큼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지나치게 개인의 명예를 중시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판결해왔다.

그래서 설사 언론이 오보를 냈다 하더라도 언론에 엄격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미국의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을 통해 공인과 일반인을 구별하여 공인에게는 사실적 악의(actual malice)와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판결했다. 공익과는 무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했을 경우에만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언론이 정확히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나 반론권을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이러한 의무를 사실상 방기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을 통해 공인과 일반인을 구별하여, 공인에게는 사실적 악의(actual malice)와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사실적 악의란 보도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혹은 진실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보도하여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다. 미국법원에서 사실적 악의를 입증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미국 대법원이 공직자의 명예보다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 한 것은 언론의 활발한 정부감시와 비판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보도할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더라도 그것을 증명할 자원이 없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때문에 언론이 과감한 진실보도를 회피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언론보도의 자유가 공직자의 명예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우리 법원의 판례에서도 역시 받아들여졌다. 현재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공인과 일반인을 구별하는 대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범주를 면책의 조건으로 인정, 언론을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검사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설사 판결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취재보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여지가 크다. 문화방송뿐만 아니라 검찰은 물론 정부기관을 출입하는 모든 언론에게 과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다.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차단된 권력은 부패하고 무능해지기 마련이다. 물론 공직자들의 명예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 오보로 인해 공직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손상된 명예의 회복은 금전적 손해배상이 아닌, 정정 보도와 발원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집단의 대 MBC 소송은 온당치 않다

임 주 응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

현 직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낸 일을 지켜보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입장은 편치가 못하다. 연개연은 자체에 언론피해구제센터를 두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언론이 사회적 약자인 일반

직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낸 일을 지켜보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입장은 편치가 못하다. 연개연은 자체에 언론피해구제센터를 두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언론이 사회적 약자인 일반 시민의 명예나 사생활적 권리에 대해서는 무심하면서도 사회적 강자인 권력과 자본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언론의 오보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가해자인 언론사보다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빼놓아진 경쟁으로 인한 오보·허보가 빈발하는 반면, 일반인의 권리의식도 높아져 대언론 소송이 증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제도도 상당히 정비되었고 법원의 관련 판례도 계속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의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 못지 않게, 권력이나 금력을 가진 기득권 집단의 대언론 소송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원고측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대통령 아들, 지역 토호나 자본, 종교집단 등에서 심지어 거대신문사까지도 언론소송을 손쉽게 거론하고 또 이용하는 것을 보면 이를 반드시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물론 이들도 명예권, 인격권의 권리 당사자임은 분명하고 얼마든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 일반인과는 비할 수도 없이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언론에의 접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보도를 문제삼아 바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다. 이번 사건도 단순히 통상적 개인 또는 집단과 언론사의 권리 다툼으로 심상히 보아 넘기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는 자칫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저널리즘의 순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제소 사건의 성격에 관한 분명한 점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기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는 자칫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저널리즘의 순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제소 사건의 성격에 관한 분명한 점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1. 검사들의 제소의 정당성에 관하여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든, 이번처럼 그가 검사든 판사든간에 개인의 명예가 언론의 보도에 의해 훼손되

었다면 이를 바로잡고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지난 1월 '대전 법조 비리' 사건 당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소속하였던 검사들로 MBC가 당시 사건에 관해 진실의 증명 없이 검사들이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거나 전판예우 차원에서 담당사건을 잘 처리해 주었다고 보도하여 "악의적으로 대한민국의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전체를 경멸, 조롱, 혐오, 배척, 망신, 폄하하였고" 개개 검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11억원의 손해배상과 18건의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여기서 우선 따져보아야 할 것은 이 보도가 공익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몇 년전의 의정부 비리 사건 이후 법조에 대한 일반의 불신이 높아져 있던 중 이른바 '이중기 리스트'가 보도된 것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 최초 보도가 공익에 관련된 것이며 객관적 근거에 의한 진실보도라는 것은 이번 소송에서 문제삼지 않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후속보도인데, '수임장부'가 폭로되자 국민적 이목이 크게 쏠려, 언론사로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보도를 계속 낸 것이다. 검사들의 주장대로 어떠한 표현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보도가 사법절차라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익적 사안에 관계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공익에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에 있어서 악의적으로 보도대상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이른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라는 기준—우리 법원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이 적용되는데, MBC 보도는 이에 비추어 볼 때 법조계, 판검사라는 용어를 써서 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보도했으나 특정인(각개 검사)이나 특정 집단(검찰)에 대한 악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진실 증명'과 '상당 이유'의 원칙에서 보면 이 사건에 관한 사실은 '비밀 장부'와 검찰의 수사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진실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이 자신들 내부에 관련자가 있는 것으로 혐의된 사건을 그것도

비밀리에 수사한 결과가 진실에 적합하는지는 상식적으로도 의문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언론이 사실 자료에 대한 판단을 통해 진실에 접근해간다고 할 때 거의 극비로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고려할 때, 그리고 방송보도의 신속성과 사안에 쏠린 시청자=국민의 관심 정도를 고려할 때, 객관적 사실인 '비밀 장부'를 근거로 보도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검사들은 MBC의 보도가 검찰측의 수사결과 진실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므로 오보·허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검찰이 할 일이 있다면 오보라는 다름이 있는 부분을 정확한 증거로서 반박하는 일이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언론의 잘못된 표현'을 문제삼아 송사를 벌일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단순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떠나 더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 문제의 보도 내용에는 검찰 또는 법조 일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검사들은 이를 근거로 각개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형식논리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이것이 통용된다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MBC의 보도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① 법조계 일반 ② 특정하지 않은 판·검사 ③ 대전지역 판검사의 세 가지이다. 이외에도 판·검사 출신 변호사, 이니셜을 사용한 개별 판·검사, 변호사 등이 거론되었다. 이중 법조계 일반에 비리가 퍼져있다는 오지의 보도는 설사 오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불특정한 공권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자유로운 의견과 표현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 개인이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보인다. 또 지역이나 출신 또는 이니셜 등을 사용하여 지칭한 경우에는 해당자가 인격권의 당사자가 될지언정 동료나 같은 직업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문제는 검사 일반에 대한 보도인데, 이 경우 검사 개인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유사한 판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점은 막연히 '판·검사들' 또는 '검찰'이라는 표현이 검사 개인과 얼마나 직접적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표현은 단체나 자연인, 법인을

가리키지 않고 불특정하지만, 더할 수 없는 공적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 검찰은 공복이며 법의 엄정한 집행자다. 소송을 제기한 검사들은 언론 보도 이후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직무와 관련된 자들로부터 일종의 '의혹'까지 받아 "철저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만큼 검찰이라고 하는 실체가 공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반증은 될지언정 '언론의 잘못'을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 일부의 사소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전체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공권력의 특성상 '비밀 장부'가 폭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를 언론 보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다분히 편협의 소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들의 주장이 수용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언론이 제대로 존립할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예의 논리대로라면 의로 비리를 보도하면서 의사 윤리를 비판하거나, 세무 비리를 보도하면서 세무공무원을 비판하면 해당 직업을 가진 개개인이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과연 언론은 무엇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사회 전반의 개혁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있는 이때에 말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사들의 대응이 다분히 감정적이며 보복적인 행위에 호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이들은 통상적인 언론중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MBC와 협상을 하면서 언론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 - 최초 보도 기자의 직접 사과방송 후 징계, 정정보도문 18건을 5일 동안 매일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몇 건씩 묶어서 내보낼 것 -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이와 연관된 듯한 검찰의 언론대응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검사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은 '대전 법조비리 보도' 후에 늘고 있다. 심지어는 검찰총장이 직접 기자실에 달려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돌이켜 보건대 그간 사회민주화의 정도에 비해 검찰은 아직도 구시대의 의식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 검찰이 정치권력에 이용된 결과 검찰은 중립성이 훼손된 대신 검찰 조직은 외부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 성역으로 남아있었다. 이번 소송 사태를 보는 시민의 입장은 "우리 검찰은 스스로 고칠 것이 없다"고 강변하는 듯이 비친다. 수사결과 검사와

이러한 검사들의 주장이 수용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언론이 제대로 존립할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예의 논리대로라면 의로 비리를 보도하면서 의사 윤리를 비판하거나, 세무 비리를 보도하면서 세무공무원을 비판하면 해당 직업을 가진 개개인이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게 될 것이다.

직접 관련된 범죄도 없고 전별금이나, 땀값이니 하는 것은 관행이므로 문제가 안 된다는 태도인 듯하다. 검찰은 국민과 언론의 비판과 불신의 근거에 대해 성찰하기를 바란다. 보도와 여론에 문제가 있다면 검사의 엄정한 직무 수행을 통해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설사 잘못된 보도와 표현이 있더라도 해당 언론과 합리적으로 협의해 시정에 힘쓸 일이지, 힘없는 서민이 마지막에 기대는 '법률적 절차'를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2 언론이 성찰해야 할 점

검사들의 소송 제기가 온당치 못하다는 우리의 주장이 MBC 보도와 그 표현의 전부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았으면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제소 문제가 주요 측면이라는 것이며 MBC 보도에서도 발견되는 부정적인 측면들은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역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 법조 비리 당시 방송 뉴스를 본 시민 가운데는 '속 시원하다', '터질 것이 터졌다'는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과소비를 강요당하는 법률 소비자로서 그 문턱 높은 법원 출입을 해 본 사람이라면 특정한 계기에 법조계의 문제가 터져 나와 비판되고 공론화되는 것을 반길 만도 하다. MBC 보도는 이러한 국민 일반의 정서에 부응하여 강도높은 비판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일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영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MBC 보도의 표현에서는 우리 언론의 고질이라 할 수 있는 냄비 근성과 사실과 논평을 뒤섞은 '사이비 계몽주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권력 집단 또는 공적 존재에 대한 것일 경우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을 지 몰라도,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은 다른 사안에 관해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가 없다. 예컨대 역시 시민 정서와 여론을 이유로 편파 보도에 호른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보도가 그렇다. MBC만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IMF 사태 이후 경영난에 빠졌던 신문, 방송사들이 생존지상주의에 홀려 저널리즘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지라 이런 우려는 더욱 깊어진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과 언론은 각기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향후 개선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검사들의 소송은 잘못된 것으로, 취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해당 언론사도 부분적 표현을 정정하는 데 주저하지는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양자간의 유아무아식의 타협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검찰은 검찰대로 언론에 대한 자세를 고치고 언론은 관련 보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언론은 권력 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비판을, 시민과 약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최대한 배려하라고 하고 싶다.

방송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송 석 윤 / 성신여대 법학과 조교수

지난 1월에 발생한 대전 법조비리사건을 보도한 문화방송에 대해서 22인의 소장검사들이 11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방송보도에 대해서 고위공직자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선결례를 찾기 힘든 사건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유형의 판례가 흔치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언론이 국가권력의 핵심에 대해서 보도를 자제하는, 이른바 "성역"이 존재해 왔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힘으로 현행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사회가 경험한 점진적인 민주화과정 속에서 이러한 성역은 좁아지고 있다. 이는 통치권력에 의해서 헌법이 좌우되던 부끄러운 헌정사를 뒤로하고 국민의 힘으로

1. 들어가는 말

지난 1월에 발생한 대전 법조비리사건을 보도한 문화방송에 대해서 22인의 소장검사들이 11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방송보도에 대해서 고위공직자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선결례를 찾기 힘든 사건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유형의 판례가 흔치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언론이 국가권력의 핵심에 대해서 보도를 자제하는, 이른바 "성역"이 존재해 왔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힘으로 현행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사회가 경험한 점진적인 민주화과정 속에서 이러한 성역은 좁아지고 있다. 이는 통치권력에 의해서 헌법이 좌우되던 부끄러운 헌정사를 뒤로하고 국민의 힘으로 제정된 헌법에 의해서 국가권력이 창출되는 우리의 헌정사적 경험의 맥락과 함께하고 있다고 보인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국가권력의 핵심인 검사들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을 사실적인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인 수단으로 관철하려 한다는 사실에서부터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이번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단계가 단지 국가권력의 형성을 헌법이 말하는 바대로 실제로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구체적인 헌법생활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이번 소송사건과 관련해서는 언론기관과 국가권력의 민사적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헌법적인 관점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번 사안을 언론의 자유의 의의, 공무원의 기본권주체성의 문제,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한 공무원의 명예훼손의 순으로 살펴보고 나름의 소회를 피력하려 한다.

2 언론의 자유의 의의

언론의 자유가 단지 언론사의 영업의 자유를 넘어서는 뚜렷한 헌법적 보장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에 있어 지니는 언론의 역할 때문일 것이다. 대표제민주주의 하에서 언론은 국민과 국가간을 연결하고 또한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몫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현대헌법은 언론을 단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제도적으로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 이러한 언론의 자유의 기본 성격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공무원의 기본권주체성

현대헌법은 공무원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공적 과업을 수행하는 신분적 특성 때문에 기본권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우선 공무원은 사적인 영역에서 사인으로 행위할 때에만 기본권을 향유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무원은 자신이 속한 공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그 기본권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넓게 제한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이 자신의 공적 과업의 범위 내에서 행위할 때에는 헌법에 명백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기본권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의 기본권주체성을 제한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일반국민과의 법관계에서 지니는 우월성을 감안하여 공무원과 갈등관계에 서는 타인의 기본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4 언론보도에 의한 공무원의 명예훼손

언론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론은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기 마련이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보도에 의해서 인격권에 기초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의 여부이다.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국가권력의 감시와 민주적 여론의 형성이라는 언론의 공적 과업과 사인의 권리의 보호

라는 두가지 법익의 균형을 위한 이론이 전개되어 왔다. 그 중 하나가 인격영역론인데 이는 인간생활을 내밀의 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그리고 공개적 영역으로 구별하여 공개적 영역으로 올수록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가적 과업을 수행하는 자인가, 기타의 공인인가 아니면 평범한 사인인가에 따라서 언론의 책임의 정도가 결정되는 공인론이 있다. 이 사안을 위의 두가지 기준에 따라서 보면 명예훼손이 문제된 맥락이 원고들의 사적 영역이 아닌 공개적 영역의 일이고, 원고들이 국가의 고위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명예훼손 책임이 가장 많이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는 앞에서 밝힌 공무원신분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한 공무원과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현실적 악의”의 법리가 널리 인정되고 있다. 현실적 악의의 법리란 자유로운 공적 토론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행위가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나 공적 관심사에 관련된 경우는 그 과정에서 오보가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그것이 현실적 악의로 이루어진 오보임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언론의 명예훼손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64년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성립된 것인데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문제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새로이 조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판례가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공직자의 윤리 및 비위사실에 관한 보도에 있어, 특별히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과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면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 악의의 법리의 적용범위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즉 사인인 공적인 인물이나 하위직 공무원이 아닌 고도의 공적인 성격을 지닌 검사들에게도 이러한 입장이 견지

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밖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 법조비리사건과 무관한 검사들의 당사자 적격문제나 원고인 검사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증명하는 문제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5. 이번 사건을 보는 소회

이번 사건과 원고측의 소장을 접하고 우선 느끼게 되는 것은 소를 제기한 검사들이 사태의 본질과 성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과 우려일 것이다. 소를 제기한 검사들은 검사경력이 10년 미만의 소장검사들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 국가의 법질서유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자신들이 속한 집단이 전체적으로 정치화하고 부패한 것으로 매도되는 듯한 상황을 참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개인적 억울함을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 그리고 존경을 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데로 모아야 할 것이다. 연이은 법조비리사건 이후에 형성된 법조 내의 기류가 국민의 여론과 너무 동떨어져 있음을 보고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다. 이번 소송제기가 추락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욱 실추시키는 것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지적하고 싶다.

우선 한 국가의 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명예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은 일반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더욱이 법조 전체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미묘한 사안에 법원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인가를 곰곰히 생각하기 바란다.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서 결과적으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법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판결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 전체에

게 미치는 파장을 합리적으로 비교衡量 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 소장에서 보여준 원고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장의 도입부에 "1987년의 '이른바'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의 배경에 있는 원고들의 헌법관이 무엇인지 우려된다. 1987년의 민주화운동은 현행헌법을 제정한 헌법제정권력의 발동이었고, 이러한 헌법에 의거하여 검찰권력도 존재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사실보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시사만평에 대한 예민한 반응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일반 시청자들은 시사만평이라는 표현방식이 그 자체로 과장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사실보도와 혼동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음을 이해하기 바란다.

문화방송 측의 보도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문화방송의 뉴스데스크가 우리사회의 여론형성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방송보도프로그램이 국민의 권리보호에 무척이나 중요한 대전 법조비리사건을 다루면서 법조인이 몇등 신랑감이나는 식의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사회의 여론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보는 지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평소에 느끼는 바를 한 가지 말하고 싶다. 방송과 검찰은 서로 협력하여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에 노력하였으면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범죄피의자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방송과 이를 방조 내지 협력하는 검찰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인권후진국임이 공중파를 타고 전세제로 알려지고 있음을 한 번 생각해 보라고 권해 본다. 

언론과 검찰은 모두 우리사회의 강자이다. 양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위치와 공적 과업을 직시하고 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5·6공 시국사건 관련자 임용탈락, 온당한가

문 광 명 / 변호사

4는 올 2월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검사 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법원은 이번 신규법관 임용신청자 중 3명(실형 2명, 집행유예 1명)에 대해서, 법무부는 신규검사 임용신청자 중 본인(실형)에 대하여 임용거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대법원과 법무부는 과거 시국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3년째 잇따라 임용에서 탈락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법관을 지원한 집행유예자 1명까지 탈락시킨 것은 작년까지의 예에 비추어 볼 때 더더욱 퇴행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정치적 억압과 권력정당성의 결여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긴장과 저항이 사라진 지금에 이르러서 과연 이러한 조치가 온당한지 임용권자는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과거에 사익적 행위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며 사회적·공공적 행위자들이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공공적 행위를 문제삼아 현재의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은 치사한 요구다. 탈락 당사자들과 가족의 반발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커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무원임용신청에 대하여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사법당국이 직접 관장하는 법관·검사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의 임용신청에 대하여 사법당국은 왜 임용탈락을 고집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법치

국가에서 무릇 신청(임용신청)에 따른 수익적 처분(신규임용)에 대한 거부처분(임용탈락)시 그 '처분의 이유'(탈락의 이유)를 통지하고 신청당사자들에게 이의 및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법치행정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과 법무부는 매번 이를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잘못된 일이다. 법관 및 검사임용은 철저한 연수원 수료성적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성적만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고 인성, 국가관 등 종합적 기준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탈락조치의 배경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극단적 사상이나 경향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대법원 인사위원이 언론에 흘린 발언이다. 사법당국에서 아직까지 임용신청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있어서 탈락조치했다는 말은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임용권자의 "주관적 우려"만이 임용탈락조치의 유일한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유없는 편견에 기초한 행위만큼 인간사회에 해악적인 것은 없다고 본다. 미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총기난사, 흑인차별, 나찌의 유대인 학살, 교실의 '왕따', 호남인 차별, 아파르트헤이트... 이것은 증오범죄다. 법관으로서, 검사로서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상사의 지도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일이지 한 시민의 공무원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편견으로 빼앗을 권한은 임용권자에게 있지 않다. 

구시대적 사찰과 진(眞) 공안

박 원 석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부장

지난 4월 1일 저녁 대검찰청 공안부는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지난 1987년 이후 각급 검찰청 별로 공안사건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출소자들을 등급별로 나누어 정기적인 사찰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 그것도 공안부의 이 이례적인 해명은 지난 10년간 정기적인 사찰을 당해왔던 시민 음영천씨(강북구 미아 8동)가 제기한 국가배상신청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밝혀졌다.

민주화 항쟁이 한창이던 1987년 6월 대학 3학년에 휴학중이던 음영천씨는 시위도중 체포·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된 경력을 갖고 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한 뒤 10여년 동안 직장가 가정에 충실한 평범한 시민으로 생활하였다. 그러나 음영천씨는 그 동안 선거 때나 큰 시국사건이 발생할 때면 어김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서 경찰관이 전화를 하거나 집을 방문하는 등 동태를 살피는 일을 당해 왔다. 경찰관은 동태파악을 할 때마다 음영천씨의 직업유무, 직장명, 출퇴근시간, 자주 만나는 사람 등의 사항을 조사해 왔으며 이것은 1997년 12월까지 계속 되었다.

이 일로 인해 음영천씨는 지난 10년간 자신을 감시하는 존재로부터 큰 증압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평온의 자유를 침해받은 것이다.

음씨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98년 12월 지난 10여년간의 동태파악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소송도 제기하였다. 지난 3월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음영천씨의 국가배상지급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동향파악 사실은 인정하였다. 고 이 지시가 서울지검의 공식문서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 국가를 대리하여 소송 수

행인으로 출석한 종암서 소속 임아무개 경찰관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음영천씨는 지난 10여년간 자신에 대해 이루어진 경찰관의 동태파악이 검찰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대검 공안부는 '87년 이후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집시법, 노동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다 출소한 인사들을 재범가능성을 기준으로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여 동향파악을 해왔다'고 밝히고, '87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될 당시 공안사범 사후관리 지침을 그대로 둔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으며 곧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해명하였다.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대상자도 아닌 사람들을 '공안사범관리 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동향파악을 해 온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법적 사찰행위이다. 검찰 또한 이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뒤늦게 이를 인정했다 해서 곧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사찰 대상자들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으며, 이들에 대한 동향파악 내용을 즉각 폐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찰의 근거가 되었던 '공안사범관리지침'의 폐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검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바라는 것은 설부른 기대일지 모른다. 또한 전임 법무부장관의 “인권과 함께 가는 신공안” 표방을 “우리는 진공안이다”고 응수한 대검 공안부장의 일성이 지금의 검찰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해야 한다. 공권력에 의한 너무도 명백한 인권침해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넘겨버린다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백서 사건에 부쳐

정유석 / 한국성폭력상담소 위기센터 인권위원회 부장

“백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청소년보호운동의) 실적과 성과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책자가 오늘날 우리 청소년 문제의 현주소와 향후 청소년 보호정책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백서’ 발간하면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위와 같은 축사로 백서 머릿글을 장식하고 있었다. 바로 몇 페이지 뒤에서 자신의 말이 어떻게 뒤집혀져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말이다.

1997년 9월 신고전화를 개설한 이후 학교폭력,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등을 기치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을 추진해온 대검찰청은 지난 3월 1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백서’를 발간. 그 간의 추진성과와 분석결과 등 10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실어놓았다.

인권대통령 아래서 청소년인권보호의 선두이고자 했던 검찰의 희망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피해자 부모들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그대로 기재한 다음 페이지에서 여지없이 비웃음을 사고야 말았다. 청소년 보호정책의 일환이라는 첫페이지에서의 검찰총장의 축사는 ‘인권보호’-검찰청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문구들과 함께 몇 페이지 후에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였음을 스스로 확인시키고 만 것이다.

자랑하고 싶었을 거다.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이 얼마나 그동안 애써왔는지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다. 진정으로 애써 왔다면 인정하고 싶다. 정말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나 검찰은 항의방문한 여성단체에게 담당자가 바뀐지 얼마되지 않았고 자료에 기록되어있는 이름들은 당연히 가명인 것으로 알았다며 해명하기에 급급

했다. “그동안 너무나 애써왔는데... 이런걸 몰라주고...정말 슬프다.”

출입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다시 검찰총장을 다시 찾아갔을때 이후의 검찰의 방침을 묻는 자리에서도 검찰은 온정에 호소하였다.

슬퍼할 수 있는 건 검찰이 아니다. 여성의식이 부재하고 인권의식이 의심스러운 이러한 검찰에게 침해된 인권을 수사하고 구제해 달라고 맡겨야 하는 국민들은 검찰이 슬퍼해도 좋다는 자격을 부여한 적이 없다. 백서에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자신의 아이가 피해입은 것도 억울한데 또 한번 이런 일로 피해를 입어야 하나며 불안한 심정으로 상담을 청해 온 피해자 부모, 피해 당사자들 앞에서도 이해해 달라며 온정에 호소할 것인지...

백서와 관련해 검찰은 결국 담당자를 교체하고 백서 수거, 소각, 재제작을 거듭하는 해프닝을 벌여야 했다. 검찰의 인권불감증으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고통스럽고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되었다.

갑자기 없는 인권을 만들어서 보호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성폭력특별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라도, 출판물에 의한 개인의 명예훼손 금지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말이다.

법무부의 성폭력수사지침 수립, 관계자 교육에 <여성과 인권> 과목 필수 배정 등 늦었지만 근사하게 올해 사업계획으로 잡아놓았던 것들이라도 제대로 실행하고 실효성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서 말뿐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유석

수원지법 판사의 오만과 편견

편집부

지 난 1999년 5월 1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진행되었던 행정1부의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당시 법정에 있었던 목격자의 제보를 받고 사법감시센터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질의서를 5월 28일, 당시 재판장이었던 장상익부장판사에게 발송했다.

제보의 내용 : 행정청을 상대로 한 숙박업소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해 숙박업소에 투숙한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했다. 그런데 증언이 끝난 뒤 재판장인 장상익 부장판사는 증인에게 반말로, "거짓말 아냐?" 라고 물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라고 하자, "아니긴 뭐가 아냐, 해 다니는 꼴을 보니 거짓말하게 생겼는데" 라고 힐난하였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던 사람은 19세의 미성년자로서 지방의 모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증언내용에 비추어 약간의 수치심을 무릅쓰고 출석을 한 것이다.

질의서를 보낸 지 약 1주 후, 사법감시센터는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고, 2주 후인 지난 6월 9일 오후 4시경, 장상익 부장판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장상익 부장판사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질의서도 보내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해라"고 대답했다. 그래도 사실여부 만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하자, "답해줄 말이 없다"고만 했다.

제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증인의 증언을 청취해야 할 재판장이 편견을 갖고 증언을 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관계인

과 방청객이 보고 듣는 앞에서 그러한 개인적인 편견을 표시한 것이 된다. 또한 이러한 언동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증언한 증인에게는 대단히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법정에서 증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어떤 이도 법정에 선뜻 나서 증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제보의 내용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재판장은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했다.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그의 태도는 법정에서 어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법정은 시민에 의해 견제받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독일의 경우, 판사가 증인신문 말미에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여준대 대해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법정에서 실천되고 있다. 판사의 친절함 한마디에 증인은 법정에서 일에 대한 부담과 공포를 누그러뜨리고, 법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나중에 다시 증인으로 나설 마음을 먹게되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먼데있는 것이 아니며 판사의 작은 실천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재판의 독립성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법원은 시민에 대해서는 인권보호기관일 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판·검사를 비롯한 법조인은 피해자·증인은 물론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 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시민에 의한 감시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법'이라는 현재의 왜곡된 사법현실을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사법으로' 바로잡는 길일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특별검사에 맡겨야 한다.

이 태 호 / 참여연대 시민감시 국장

고 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검찰총장 산하에 두자는 법무부의 안은 이 기구 신설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재야법조계와 시민사회운동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근본 이유는 현행 검찰제도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검찰이 고위직 수사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실증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름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라고 명명했을 뿐, 검찰총장 산하에 이 기구를 두도록 하여 대검 중수부와 대동소이한 '무늬만 특별수사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지난 96년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과반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 초안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검찰의 외부에서 검찰이 수사하기 힘든 고위직과 검찰내부비리를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핵심적 내용은 이 기구의 장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맡아 운영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이지만 대통령조차도 특별검사의 임면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다.

이 법안을 참여연대만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현 여당인 국민회의도 야당시절엔 똑같은 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제와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라는 이름 외에는 모든 면에서 애초의 법안과는 다른 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검찰의 기독권 유지를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내던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법무부측은 미국식 특별검사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들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특별검사제'적 요소를 배제시키고 이 기구를 검찰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법무부는 미국검찰이 비교적 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특별검사제를 채택해온 근본 문제의식은 외면하고 부작용만 거론하고 있다. 게다가 참여연대와 재야법조계가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정치권에 의해 한시적으로 임명되는 미국식 특별검사제가 아니며, 말레이시아나 홍콩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 전담 상설 특별수사기구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반론은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핵심은 '상명하복-기소권 독점체제'로 되어 있는 검찰구조의 문제점을 개혁하여, 검찰 외에도 기소권을 행사할 독립적인 주체를 세우자는데 있다. 한마디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기소기능을 2원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고위직 비리 수사에 있어 상호견제가 가능한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이며, 이를 통해 늘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검찰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문제의식이 반영되지 않으면 기구를 신설할 의미가 없다.

이태호

재판 불출석, 국회의원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 강 준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정 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위험수위를 넘어 정치무용론으로까지 치달고 있다. 3·30 선거에서의 50억 사용설, 고급옷 로비사건, 조폐창 파업유도에 이르기까지 권력층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더위를 더 한층 짜증스럽게 느끼게 한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입법·제도화하기는커녕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특히 온 국민이 구조조정의 고통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반해, 권력 핵심층의 잇따른 초법적 특권과 권력남용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구체적인 범법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정치관행이니 회기중이라 소환이 불가능하다느니 하면서 비리혐의 의원들에게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 또한 1년 넘게 방탄국회를 계속 소집하더니 끝내 비리혐의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무엇보다 정치인에게는 힘없는 일반인과 다른 초법적인 잣대가 적용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자괴감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김윤환, 김중배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권력형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들 정치인들이 지정된 공판기일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자체를 거부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국민이면 마땅히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 대표이자 각자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 법질서를 정면으로 어

지럽히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로써, 그렇지 않아도 정치무용론으로 치달을 만큼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불신과 비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지난 4월 8일, 참여연대는 비리혐의 정치인들의 재판불출석과 재판기일 미확정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재판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서를 전달하였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국회의원회 김중배 의원실에 항의서를 전달하러 방문하였을 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경험해야 했다. 김중배의원 비서관들은 항의 방문단에게 “당신들 쇼하지 마라”, “출석 거부한 적 없다”며 끝내 항의서 수신을 거부하였고, 방문단은 ‘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로 문 밖으로 떠밀려 나와야만 했다. 상식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정치권의 현주소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들의 비판여론에 밀려 김홍신의원 등 한 두명의 의원이 재판에 출석하였으나, 대다수의 의원들은 여전히 재판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사회개혁을 촉구하고 그 내용을 입법 제도화해야 할 국회가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져 오히려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 사법 당국의 성역 없는 원칙적인 법 집행과 정치권의 탈법적인 정치관행은 종식되어야 한다. 아울러 특별검사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상설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패방지법’ 제정 등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특검제에 대한 13가지 오해와 편견

- 검찰의 특검제 반대논리를 총비판한다

검찰은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원한 특별검사제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조회 답변에서 특검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특별검사제가 정치적 예측을 심화시키고 정파간 정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며 전면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그야말로 기소독점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특별검사제 도입의 득보다는 실을 과장한 아전인수격의 논리에 불과하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제 반대 논리를 뒤집어 본다.

1. 미국여성이 다이어트한다고 방글라데시 여성도 다이어트 하는가? : "유일한 도입국가인 미국에서도 실패했다"는 검찰논리에 대하여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검사제가 미국에서도 실패한 제도라는 논리'는 "미국의 여성이 다이어트하고 있다고 해서 방글라데시나 비아프라 여성도 다이어트를 해야한다"고 하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미국의 검찰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검찰수준은 경제적 차원에서 방글라데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검찰의 공정성과 비정치성은 1970년대 특검제가 도입될 당시의 미국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검찰은 미국에서 실패한 제도라는 이유로 특검제를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미국에서 성공한 기소대배심제도와 검찰총장선거제(주)를 도입한다면 찬성할 것인가? 정상적이고도 중립적인 검찰권이 확립된 미국의 사법현실을 파행과 종속으로 얼룩진 우리의 사법현실과 동일하게 놓고 특검제의 부작용을 논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2. 검찰은 지난 10년간 어디 갔다 와서 "자다가 남의 다리 굽는 소리"를 하고있는가? : "절차상 철저하고 냉정한 검토가 없었다" 검찰논리에 대하여

검찰은 특검제 도입논의가 절차상 철저하고 냉정한 검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1988년 이후 10년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변호사단체등에서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를 거듭해 왔다. 미국의 특별검사제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이 초빙되어 강연과 토론이 벌어졌고 수많은 법학자, 행정학자들에 의해 특검제 도입가능성과 방안에 대한 논문들이 쓰여졌다. 시민단체들과 법률가단체들에 의해 완전히 조문화된 법안이 국회에 청원되었고 야당들 역시 몇 차례에 걸쳐 특검제법안을 정식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어디를 갔다 와서 지금 "자다가 남의 다리 굽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3. 설마 지금보다 더할리야? : "검찰권의 정치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는 검찰논리에 대하여

검찰은 특검제를 도입하면 여야간의 정쟁에 의해 검찰권의 정치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마 지금보다 더 검찰권의 정치화가 심할리야 있겠는가? 지금까지 검찰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이미 드러난 사실조차 은폐하고 왜곡하는데 급급하였다. 5.18사건, 김현철사건 ..., 그 끝없이 이어지는 의혹들이 결국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때문이었다. 오히려 특검제가 도입되면 검찰이 그러한 정치적 논쟁으로부터 해방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 야당은 사사건건 표적수사, 불공정수사, 특혜수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정치종속화를 비판해왔다. 특검제가 도입되고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 결과에 야당이나 일반국민들도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써 오히려 정치적 논쟁은 사라지고 사법절차 내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4. 작은 것이 아름답다! : "검찰권의 이원화를 초래하고 국가기관 구성원리에 반한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검찰은 특검제가 "검찰권의 이원화를 초래하고 국가기관 구성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권은 이원화 되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헌법상의 국가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 왜 검찰권은 이원화되어서는 안되는가? 미국은 FBI가 수사를 전담하고 있고 프랑스는 예심판사가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다거나 판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다.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를 통해 검찰권을 견제하고 일본은 검찰심사회를 통해 검찰을 통제한다. 우리나라 만큼 완벽하게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가. 권력독점은 부패와 남용을 막게 마련이다. 그 견제와 통제는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검찰권이 쪼개지고 작아질수록 이 사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다.

5. 정파간 정쟁 - 무엇이 두려운가? : "자파에 유리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정파간 정쟁 우려 높다"는 검찰 논리에 대해

특검제가 도입되면 그 특별검사를 자파에 유리한 사람으로 임명하기 위한 정파간 정쟁이 우려된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복수 추천 후보를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면 어느 당파도 특별검사 임명과정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대한변호사협회라고 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단체의 추천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파간의 정쟁의 가능성을 극히 줄여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검찰의 우려는 공연한 일이다.

6.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이 이다지도 높은 나라는 없다 :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현실에 적절치 않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특검제를 도입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현실이 적절치 않다는 검찰의 논리는 반대로 특검제를 도입해야 할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압력을 가하는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현실이야말로 통상적인 조직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특별검사를 도입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미국만큼만이라도 우리 정치가 제자리를 찾고 검찰이 정상화된다면 그때에는 시민이 앞장서서 특별검사제를 폐지하라고 소리높여 외칠 것이다.

7. 옳은 말도 뒤집어보면 틀린 말이 된다 : "미국과 검찰제도 자체가 상이하고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검찰은 또한 "미국과 우리나라는 검찰제도 자체가 상이하고 역사적 배경도 다르다"고 주장한다. 옳은 말이다. 우리의 현실은 미국과 같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특별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미국이 특별검사제를 도입했던 1974년 당시와 비교했을 때, 사회 여러 차원의 민주화 정도, 검찰에 대한 권력의 집중 정도, 권력형 부정부패 등에서 우리사회가 훨씬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검찰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가 그대로 입증해 주고 있지 아니한가?

8. 배울 것을 배워야지! : "미국에서조차 반대여론이 비등했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미국에서조차 반대여론이 비등했다는 검찰논리는 다른 나라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못된 것만 배우고자 하는 왜곡된 검찰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어느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라도 반론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미국에서는 그러한 반대논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고지도자들의 비리와 부정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이유로 지난 230여년 간 이 특별검사제가 존속해 왔던 것이다. 왜 검찰은 남의 눈에서 티눈만 보려 하는가?

9. 권력분립의 ABC도 모른다! :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특별검사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검사들이 얼마나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하기야 그동안 헌법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

던 검찰이 헌법정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검제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정신과 기본권보장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10. 경제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 "경제성과 실효성 면에서도 도입가치가 없다"는 검찰주장에 대해

스타검사가 화이트워터사건 수사 비용으로 4천만 달러를 썼다는 것을 예로 들어 경제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검찰의 주장은 어떻게 하면 특검제를 면해볼 수 있을까 고민한 소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의 상황에서 그 막대한 수사비용이 필요할 리 만무하다. 특별검사 한두사람이 수사관 1-20명 데리고 하는 게 고작일텐데 무슨 돈이 그리도 많이 들어가겠는가. 더구나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권력형비리를 수사,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 보라. 비용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도입을 막는다는 것은 명분없는 반대에 불과하다.

11. 이유도 가지가지 : 특별검사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특별검사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특검제를 반대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지극히 공색한 변명에 다름 아니다. 1-2명의 특별검사가 무엇을 전횡한다는 말인가. 수사기간이나 수사대상이 대체로 정해져 있고 제한된 인력밖에 가지지 못한 특별검사가 도대체 무슨 전횡을 부린단 말인가. 오히려 특별검

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기존의 막강하고 방대한 검찰조직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12. 국민의 검사, 특별검사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다. 수사시 책임감과 균형감각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면 책임감과 균형감각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그러나 결과는 그 정반대일 수밖에 없다. 특별검사는 변협의 추천이라는 과정,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검사의 입장에 선다.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통의 검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눈과 입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 수사기관이 끝나면 더 이상 검사도 아니고 승진할 일도 없는 사람이다. 무엇이 무서워 책임있는 수사를 못하겠는가. 오직 국민과 역사앞에 설 수 있는 것이 특별검사이다. 지금껏 권력의 눈치나 보고 힘있는 자

의 압력이나 받는 것이 책임있고 균형감각 있는 검찰의 행태였는가?

13.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기존의 검찰은 새로이 태어난다: "기존 사정기관과의 갈등으로 사정역량이 약화된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특별검사제가 생겨나면 기존의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과의 갈등으로 사정역량이 약화된다고 검찰은 내세운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마치 검찰은 갈등을 일으키겠다는 협박으로 밖에 안보인다. 특별검사가 국민의 신임을 받아 눈치코치 안보고 불의를 척결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선다면 검찰의 코는 납작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바로 기존의 검찰조직이 분발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뺨를 째는 노력"을 진정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할 최대의 이유가 된다. 서로 경쟁적인 노력을 통해 사정기관이 바로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법조인자료실 후원을 위한 솔로몬통장

당신이 사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조인 자료실은 판검사 2800여명의 개인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관리되는 자료는 사법정의를 위한 시민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한 명의 법조인을 책임져 주십시오.
법조인자료실 파일 하나에 1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후원금은 자료실의 자료검색 및 구입, 복사, 전산화를 위해 쓰여집니다.
후원자에게는 정의로운 사법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는 명예를 드립니다.

■ 법조인정보자료실의 목적에 맞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 인권신장과 국민권의 보호를 위해 활동한 사항
- 인권침해와 비민주적 수사, 재판을 행한 사항
- 법조인의 비윤리적 행위

함께 만들어가는 법조인자료실

법조인정보자료실의 손과 발이 되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 통신공간에서 지속적인 자료검색
- 분야별 판례평석자료 지속적 제공
- 공보에 게재되는 이외의 판결문이나 재판내용 공급
- 법조인 경력·임지 등 변동사항에 대한 파일체크업무
- 신문스크랩 및 정리
- 전산화를 위한 자료입력 작업

- 은닉된 법조인의 재산관계나 불법적 영리행위
- 그늘지고 소외받은 곳에 행한 봉사 내용
- 법정내·외에서 행한 법조인의 비민주적 언행이나 태도

• 국민은행 015-21-0808-184 예금주 문혜진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이 글은 인터넷 상의 '일본 검찰심사회' 제도를 소개한 글,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1. 시행 50주년을 맞은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국민의 일반적인 양식을 검찰관의 일에 반영시켜, 보다 좋은 형사사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 중에서 선출한 11명의 검찰심사원이 검찰관의 불기소 처분의 옳고 그름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금년으로 제도시행 50주년을 맞이하며, 이 기간 동안 검찰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약한 시민은 약 45만명, 심사된 사건은 13만 건을 상회하며 그 의결에 기초하여 검찰관이 기소한 사건도 1000건을 넘는 등 많은 실적을 남기고 있다.

2. 문답으로 알아보는 검찰심사회 제도

문: 검찰심사회는 그동안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답: 국민들 중에서 선출된 11명의 검찰심사 위원이 전체 국민을 대표하여 검찰관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금년은 이 검찰심사회 제도가 시작된지 50주년이 됩니다.

문: 역사가 깊은 제도이군요. 검찰심사회 제도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답: 일본에서는 종래, 피의자를 기소할 것인지 아닌지

는 전적으로 검찰관이 결정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소화 21년(46년)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의 민주주의 정신에 비추어 검찰관의 판단에 대하여서도 가능한 한 국민의 일반적인 양식을 반영시켜 그 적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로써 검찰심사회 제도가 고안되었고, 검찰심사회법이 소화 23년 7월 12일(48년 7월 12일)에 공포, 시행되어 오늘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문: 50년이 되었다고 하면, 검찰심사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뽑힌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군요?

답: 발족 후 평성 10년 4월 말일(98년 4월 말일)경 보충원(검찰심사원에 필요인원이 생겼을 경우 대신해서 검찰심사원의 일을 하는 사람등)까지 합치면 약 45만 명이 선출되었습니다. 검찰심사원과 보충원은 중의원 의원 선거권을 가지는 국민들 중 201개의 각 청별로 11명씩 선출되어 있으며, 6개월의 임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문: 검찰심사회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사건을 심사했습니까?

답: 평성 9년 말(97년 말)까지, 전국의 약 13만 건의 사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로 심사의 대상이 된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상해(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대부분 사기 등이었습니다.

문: 그 가운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건도 있습니까?

답: 옛날에는, (造船)(疑獄-〈정치 문제화한 대규모 사건〉)사건과 (近江)사건(오오사까 제일검찰심사회) 등이 있고, 비교적 근래의 사건으로는 호텔 (大東館) 화재사건(沼津 검찰심사회), 닛코 정보제트기 추락 사건(前橋 검찰심사회), 나다시오 (航泊日誌) 변조사건(요코하마 검찰심사회), 信樂高原 철도열차사고 사건(大津 검찰심사회), 동경 佐川 사건(일명 사가와 큐빈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가와라고 하는 택배회사의 정치인 로비서건입니다. 역자 주), 藥害에이즈 사건(이상 전부 동경제일 검찰심사회) 등이 있습니다.

문: 검찰심사회가 심사한 결과는 어느 정도 파급되는 겁니까?

답: 검찰심사회는 심사결과 검찰관의 불기소처분은 당연하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경우에는 '불기소 당연'이라는 결의를 하고 검찰관의 판단을 인정합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검찰관이 이 정도의 심사 혹은 자료를가지고 불기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더욱 파헤쳐 들어가 조사한 후에 결정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경우에는 '불기소 부당'이라는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검찰관이 불기소한 것은 옳바르지 않고 당연히 기소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경우에는 '기소 당연'이라는 결의를 합니다. 이러한 검찰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찰관은 기소를 해야 하는가 또는 불기소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는가를 한번 더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소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다시 기소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문: 그러한 '기소 당연'과 '불기소 부당'이라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답: 동일 사건에 복수의 결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1건 당 생각해 보면 5000건 정도나 됩니다. 그 가운데 검찰관이 재조사한 결과 기소된 사건은 1000건을 초과하고 약 2할 정도가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징역 10년, 징역 8년 등의 중형에 처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문: 검찰심사회가 지금까지 50년간 많은 실적을 남겨왔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심사회에 심사 청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 청원(이의제기)의 이유 등을 쓴 청원서(이의제기서)를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관이 소속한 검찰청과 동 지역에 있는 검찰심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에는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고 비밀도 보장됩니다. 만일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장가까운 검찰심사회(지방법관소 및 지방재판소의 주요한 지부에 있습니다)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법은 참여하는 시민이 있을 때 완성 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운영됩니다.

- 법조인 자료실 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리
- 「사법감시」등의 매체에 실을 원고 작성
- 「사법감시」 회원통신 등 우편발송업무
- 법률상담실 상담접수 및 사법피해자 지원활동

활동보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정부 사법개혁위원회

※ 이 논평은 지난 5월 4일,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 인선 직후 발표된 것이다.

1. 사법개혁 전반을 다루게 될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발표되었다. 그 어느 때 보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바람과 기대가 높았던 만큼, 이번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 인선 결과에 대한 우려와 실망이 적지 않다. 과연 대통령 및 현 정부가 사법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

지난 정부에서 법조계의 고질적인 집단이기주의의 벽에 부딪혀 사법개혁의 과제가 좌절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정부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만큼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위원장 및 위원의 인선결과를 보고는 통해 그 기대를 접지 않을 수 없다.

2.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로 사법개혁위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이번 인선의 면면을 보면 전문성과 중립성은 물론 대표성의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리는 이 인선을 모두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사법개혁을 위하여 노력해온 존경할 만한 인사도 여럿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의 인선은 당초 대통령이 약속했던 중립적이고 개혁적인 사법개혁의 원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3. 먼저, 개혁대상이어야 할 법조계가 위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법

조계가 수적으로 한둘 더 많다고 하나 실제 내용을 보면 많은 위원이 과거 법조계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반수가 법조계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비법조계 위원 중 상당수는 법조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경력과 전문성이 적어, 구체적인 논의에 직면해 비법조계가 쟁점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시민적 이해를 대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법조계의 이해가 걸린 쟁점에 대해 법조계가 강력한 구심점을 갖고 응집된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법개혁위원회의 개혁추진력을 의심케 하는 점이다.

4. 무엇보다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립성과 개혁성에서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인사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장에 대한 인선도 수궁하기 어렵다. 김영준 위원장은 과거 박정희정권 당시 대통령비서관 및 특별보좌관을, 6공 당시에는 감사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우리는 김영준 위원장이 그동안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해 어떤 적극적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어떤 기준에서 김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정했는지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5. 또하나 지적할 것은 추진위원의 연령이다. 40대 인사가 1명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그 1명도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는 모두 50-60대의 인사여서 정부의 어떤 개혁 위원회보다 고령화 되어 있다. 개혁과정에 원로들의 지혜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개혁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30-40대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있는 점에서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인선을 했음을 느낀다.

6. 이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그 동안 사법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주장을 펼쳐온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가 배제되어 있어 사법개혁의 내용과 그 폭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제한적일 우려 또한 내포하고 있다. 과연 이 위원회가 그 동안 사법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여 개혁적인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지 우려가 적지 않다.

7. 이러한 인선의 책임은 결국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의 부족에 있다고 본다. 김대중 정권은 사법개혁에 대한 대통령 공약을 거의 뒤집거나 한없이 보류하고 있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의 출범초기에 대통령 공약을 보면서 현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그동안 추진된 개혁안은 전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번에 다시 추진위의 구성을 보면서 김대중 정권이 사법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가닥 기대마저 접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

8.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법개혁추진위의 인선에서도 나타난 바, 김대중 정부가 법조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진실로 시민사회의 이해를 대변하여 21세기 선진사법을 이루어낼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본다. 이후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시민사회를 진정으로 대변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을 위한 독자적인 추진안을 만드는 등 사법개혁작업이 시민적 공론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김

활동보고●●

‘박충근 검사의 대한매일 여기자 성추행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서 울지검 동부지청 박충근검사가 5월 7일, 대한매일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추행은 지청장을 비롯한 동부지청 검사들과 주재기자들 간에 함께 했던 회식자리 후,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돌아온 기자들에게 박충근 검사가 찾아와 2차를 갈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 5월 10일, 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여연대 등은 공동으로 박충근검사의 대한매일여기자 성추행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서울지검 동부지청(5월 15일), 동부지청 주재기자(5월 15일), 김미경 기자(5월 14일)에 대해 방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를 통해 박충근검사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 및 김기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어 검찰총장 면담(5월 21일)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충근검사에 대한 면직과 정충수 전 동부지청장에 대한 징계 및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공식사과와 검찰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현재 박검사는 전보발령을 통해 전주지검에서 근무 중이며, 대검 징계위에서는 아직도 징계여부 및 정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위에 회부할 것을 요청한 정충수지청장은 법무부 보호국장으로 지난 6월 6일 사실상 승진을 했다. 이로 인해 검사는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는 기존의 관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명백한 인권침해, 불법적인 행동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는 검찰은 더 이상 인권의 보루라고 불리워 질 자격이 없다. 단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거대한 특권적 집단일 뿐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아직 이 문제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신임 박순용검찰총장에 대해 면담을 요청해 논 상태이며, 검찰 측의 징계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김

대전 법조비리사건 관련 활동일지

1999년 1월 8일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 보도	논평9.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8일	논평1.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법조비리 집회1.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법조삼륜을 규탄한다	28일 집회2. 검찰총장 퇴진 및 검찰개혁 촉구집회
	민주노총, 국민승리21, 대전 참여자 차시만연대 등 56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집회	2월 1일 논평10. 대전이종기변호사사건 수사결과 발표,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9일	논평2. 대검의 직접수사와 관계자 명단공개를 촉구한다	2일 논평11. 박상천장관과 김태정총장 퇴진 없이 검찰개혁 없다
11일	논평3.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 시민고발창구 개설	4일 집회3.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 퇴진과 특검제 도입 촉구집회
12일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 시민고발창구 개설	4일 검찰개혁의견서 발표, 대검찰청접수
	논평4. 대전지검의 수사팀을 교체하라	19일 논평12. 조직안정을 위해 개혁을 포기한 검찰의 소폭인사
13일	논평5. 연이은 법조비리에 대한 검찰총장의 책임	23일 사법개혁대토론회, 검찰·법원개혁 및 법조교육양성제도에 대하여
15일	논평6. 전관예우금지,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경실련·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참여연대 공동주최
	- 법무부장관의 전관예우금지 입법반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3월 2일 공청회. 변호사법개정에 관한 긴급공청회
25일	논평7.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은 경찰,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까	4일 의견서. 변호사법 개정안 문제 많다
	- 금품 향응 판검사 엄중 처리하여야	4월 29일 긴급토론회. 사법비리 보도에 대한
27일	논평8. 수뢰·향응 검사명단, 액수 전면 공개하라	검사들의 명예훼손 소송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연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주최
		5월 4일 논평13.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정부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감시」

통권 제12호 / 1999년 6월 • 등록번호 마-2428

발행인 김중배

편집인 한인섭

편집위원 박은정(이화여대), 차병직(변호사), 하태훈(홍익대), 이철수(이화여대), 한상혁(건국대), 김동훈(국민대), 김제원(성신여대, 변호사), 황승홍(법학박사), 심병호(회원)

편집자문위원 남영진(한국기자협회회장), 심재우(전고려대), 유현석(변호사), 한상범(동국대)

통신원 권규대(변호사/부천), 김의숙(변호사/부산), 김철준(변호사/수원), 나영명(전국병원노련 편집부장),

문종운(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발행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 대표전화 : 723-5300, • FAX : 723-5055, • 천리안/하이텔 : PSPD • 나무누리/유니텔 : 참여연대

• 전자우편 : pspd@nownuri.net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orepspd.org

시민의 힘을 모읍니다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뒷돈으로 굴러가는 사회질서, 유권자를 무시하는 정치,

실종된 기업윤리...

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는 현실 속에서

미래를 향한 꿈도 질식되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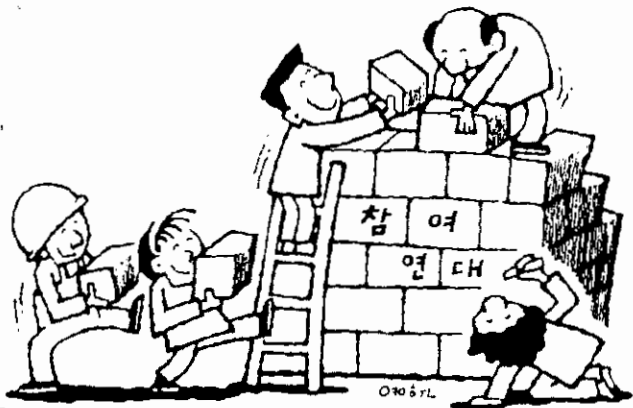
참여연대가 나섰습니다.

5대 재벌 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 국민복지기본선확보 사회복지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

아파트공동체만들기운동 등 뒤죽박죽 세상을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공동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 투자하십시오. 참여연대에서 커져가는 시민의 힘을 체험하십시오.

참여연대 회원가입안내문의 723-4251, 팩스번호 723-5055

국민은행 015-25-0031-882

외환은행 059-22-00933-5

농협 053-01-237487

주축은행 504501-01-001318

하나은행 162-054331-00105

기업은행 024-031807-01-016

조흥은행 322-01-118579

서울은행 14101-0357904

한일은행 082-085833-13-101

에 금 주 : 참여연대

상업은행 113-05-006363

우체국 010579-0065471

제일은행 325-20-313360

신한은행 324-01-100660



참여연대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FAX : 723-5055,

천리안/하이텔 : PSPD·나우누리/유니텔 : 참여연대

전자우편 : pspd@nownuri.net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pspd.org>

■ 참여연대의 제정을 틈타 하기 위해 회원들의 자동이체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 회원가입신청문의 723-5300(대), 723-4251(시민사업국)

기획 인쇄의 모든것은 착한 사람들의 일터 한글나라기획에서

한글나라기획은 사회단체와 함께합니다.

선거자료 및 도서출판대행

카드로그·광고·행택·라벨·각종BOX

회사양식·교자·포스터등 인쇄의 모든것

이제 한글나라기획과 함께하십시오.

밤새지마십시오

예산부족·편집인력부족·급한행사 준비에

이제 밤새지 마십시오 귀하의 곁에는

한글나라기획사가 있습니다.

착한사람들의 일터 한글나라기획 ☎(02)2273-5946 FEX : 2273-5946 ID : 나우누리「청년신문」

E-mail. sinmun@nownuri.net. 주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8-5삼인빌딩 201호

기획·편집 인쇄의 모든것 한글나라기획